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12차 모집 공고

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「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27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

1. 모집 개요

□ 지원대상

- o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* 및 활용기업(벤처(창업) 및 제조기업 등)**
 - * 디자인전문기업 :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,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
- ** 디자인활용기업(벤처(창업) 및 제조기업): 디자인-기술협업 전주기 지원사업(구. 디자인혁신 유망기업), 디자인-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, 스타일테크 유망기업,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, 지속가능디자인 지원사업(구.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), 디자인-온라인제조플랫폼 사업(서비스플랫폼기업),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, 글로벌생활명품 등 KIDP 지원 관련 사업 선정 기업

지원 제외 대상

- ·동일 사업·법인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- ㆍ동일 사업주가 1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, 1개 기업에 한하여 지원
- •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기업
- ·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
Ш	지원규모	: 20개시	├ ¹	내외				
	모집기간	: 2025.	2.	27(목)	~	3.	12(个),	, 2주

2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5. 2. 27(목) ~ 3. 12(수), 2주

□ 신청방법

- ㅇ이메일 접수 : designfinance@kidp.or.kr
- * 기타 문의 031-780-2167 (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)

□ 제출서류

- 신청서 1부 : 별첨 양식 참조
- ㅇ 사업자등록증 1부
- 2022년 ~ 2024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 확인원) 각 1부(직전 3년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- ㅇ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
- o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: : 별첨 양식 참조
-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부(해당 기업) : 별첨 양식 참조
- 기타 참고자료 (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확인서 등)

3. 지원 내용

□ 지원내용

- 보증한도 : 기업별 1억원 이상 (1억원까지는 100% 보증)
 - 기술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1억원 초과 지원 가능
 - * 다만, 기보 심사에 따른 보증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 보증금액 이내 지원
- 기술평가료 : 20만원
- 보증료 지원 : 보증료율 0.4%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
 - (KIDP) 보증료율 0.2%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
 - (KIBO) 보증료율 0.2%p 감면

- 지워조건
 - 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
- ·보증한도 : 기업의 보증 한도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보증하는 한도
- ·기술평가료 :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는 비용 (비용지급 : 한국디자인진흥원 → 기술보증기금)
- ·보증료 :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이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
 - 한국디자인진흥원 : 직접 지원 (비용지급: 한국디자인진흥원 → 기술보증기금)
 - 기술보증기금 : 직접 지원 (보증료율 감면)
- □ **보증서 발급기관** : 기술보증기금
- □ 지원기간 :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
 - * 보증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되며, 기업 측 필요 시 연장 가능

4. 선정 기준 및 절차

□ 선정 기준

ㅇ 적정성 검토 항목

구분		검토항목	세부내용	점수
	정량	재무현황	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	100점
1차	가점 *최대5점	수출 실적	매출액의 30% 이상 수출	5점
		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	사업계획의 타당성	2점
	총 계			

-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: 기술보증기금 자체 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심사
- ※ 적정성 검토 통과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직접 보증신청 및 상담 절차를 진행하실 것
 - 사업장 인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유선 문의 또는 방문하여 신청
 - 2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디지털지점(https://kibo.or.kr/dbranch)을 통해 신청(붙임3. 참조)

□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및 제출

○ 보증지원 결격사유 사전 확인(붙임3. 참조) : 1개 항목 이상 저촉 시 보증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□ 선정 절차

주체	절차	일정	주요내용
	12차 모집공고	2월	금융지원 회망 기업 모집 ·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·KIDP 지원 관련 선정 기업 (디자인활용,벤처(창업),제조기업)
한국	~		
디자인 진흥원 (KIDP)	12차 신청접수	3월	신청서류 제출 ·수요기업 → KIDP(한국디자인진흥원)) *제출방법: 이메일
	~		
	12차 선정검토 ^{3월}	적정성 검토 · 매출실적 등	
	~		
	12차 기업추천	3~4월	적정성 평가 통과 기업 추천 KIDP(한국디자인진흥원) → KIBO(기술보증기금)
	보증신청, 상담		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 및 상담 (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)
	신청접수	3~4월 (KIDP 추천 이후)	기술평가에 필요한 서류 접수 ·수요기업 → KIBO (기술보증기금)
기술 보증 기금 (KIBO)	기술평가, 보증심사		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한 현장방문(필요시) 실시
	선정		금융지원 대상기업 선정
	~		
	보증서 발급		보증서 발급

- * 사업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
- □ 최종 선정 이후 절차 : 발급 받은 보증서로 거래은행에 대출 신청

5.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

- 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
- 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
-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, 지원 제외
- o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,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- o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,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
-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파산 ·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
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
-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

□ 기타 안내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
 해야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
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6. 문의처

- □ **유선문의** : T. 031-780-2167(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)
- □ 이메일 : designfinance@kidp.or.kr
- □ 본 사업 이외 중소기업 전문정책 금융기관 추천 상담 접수
 - 본 사업 이외에 우수디자인전문기업 및 우수디자인활용기업 (벤처(창업), 제조기업등)을 중소기업 전문정책 금융기관 추천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전화/이메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디자인 금융지원 신청서

フ	입	정	보
			_

기업명		설립일	0000. 00. 00				
업태		업종					
_1 ^1 ~1	□ 개인 □ 법인						
기업형태	□ 디자인전문회사 □ 스타트업 □ 중소기업 □ 중견기업 □ 기타(단체 등)						
	디자인전문회사						
분야	□ 제품 □ 시각 □ 환경 □ 멀티미디어 □ 포장 □ 서비스 □ 기타 □ 종합 □ 일반기업						
	사업분야 및 주생산품 :						
사업자 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					
매출액(억원)		상시종업원(명)					
주 소	(우:)						
대표자	성함 휴대전화	담당자	성함 휴대전화				
내 표 자	유대전화 이메일		유대진와 이메일				
한국디자인							
진흥원							
참여사업							
□ 자금 집행계획 : 신청 금액(000원)							
인건비, 신상품기획, 디자인개발, 시제품제작,							
운영 및 판로, 시장개척비용등 활용 예정 내역 및							
	구체적인 자금집행 모두 작성						

- □ 특허출원, 특허등록, 실용신안, 상표등록, 디자인등록, 지식재산권 등을 기재 (해당기업에 한하여 기재)
 - * 정부, 공공기관, 기업에서 인정한 기술인정서, 각종 증명원 등 기재 (해당기업에 한하여 기재)
 - * 디자인전문기업은 자체 브랜드(상품)등 기재 (해당 기업에 한하여 기재)

구분	등록번호	등록일	기업명 (등록자명 등)	등록내용
1				